

(제5-1-1호)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80,000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 (주)	420,000
	우선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4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제3자(주주 중 일부) 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2 장 주 식
	제 9 조 신주인수권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한다. (2)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제2조의 목적 달성과 경영상 필요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의 내용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기타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2장제9조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
9. 납입일		2019년 10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1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1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 제2장제9조 신주인수권 관련 조항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 주식수(주)	비고
최동희	최대주주	최대주주 지분유지	해당사항 없음	20,000	
한상현	주주	참여지분확대	해당사항 없음	40,000	
임승우	주요주주	참여지분확대	해당사항 없음	20,000	